

변경전후 대비표

변경전	변경후
<p>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 ① 신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 상품협의체에서 결정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 ① 신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 상품협의체에서 결정한다. <u>다만,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 변경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등을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협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 (설명의무) 회사는 법 제 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 (설명의무) 회사는 <u>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</u>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 (투자광고)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 <u>법 제57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3호</u>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.</p>	<p>제7조 (투자광고)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 <u>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</u>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 제 1 조(시행일)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